

불법·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

본 확인서를 제출받는 목적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6항에 따라 불법·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은행이 고객에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.

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, 자금세탁 행위,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, 및 강제 집행의 면탈,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고객 성명 _____ (인·서명)

(대리인 신청시) 본인 _____의 대리인 _____ (인·서명)

(일괄계좌 개설 신청시) 기관 대표자 성명 _____ (인·서명)